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775
----------	------

2021년 12월 17일
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년 10월 14일, 이광성 의원 외 29명

나. 회부일자: 2021년 10월 20일

다. 상정일자: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8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21년 12월 17일 상정·원안 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이광성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 근거를 바로 잡고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함(안 제15조제1항).
-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.

### **3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: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# **4. 검토보고 요지**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.

### 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### **6. 토론요지: 없음**

### **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**

### **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**

### **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**

#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내용”을 “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보전·관리”를 “보전 및 관리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지구전체”를 “지구 전체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창조를”을 “조성을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”을 “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환경훼손의”를 “환경훼손에 관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2. 환경보전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

제7조제2항 중 “절약과 재활용 및”을 “절약 및 재활용과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환경시책”을 “환경보전시책”으로, “시에서”를 “시가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시에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”을 “환경보

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”을 “사업 시행에 드는”으로, “방법”을 “방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배치되지”를 “어긋나지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이의 유지를”을 “이를 유지하기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”을 “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 등)”을 “(공공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공시설”을 “공공환경시설”로, “사업의 실시”에 있어”를 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”로,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드는”으로,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드는”으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행하는”을 “수행하는”으로, “필요한”을 “대해 필요한”으로, “범위 안에서 포상 할”을 “범위에서 포상할”로 한다.

제23조 중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시책에 대하여”를 “시책을 추진하는 경우”로, “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”을 “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2제2항제5호 중 “정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3 중 “자치구로부터”를 “자치구에서”로, “협약”을 “시 또는 자치구와 협약”으로, “책임”을 “대하여 그 책임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”을 “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이루어 질”을 “이루어질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 한다.

제26조의2제2항제3호 중 “법령”을 “그 밖에 법령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환경교육·홍보활동에”를 “환경교육·홍보활동의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감시·측정”을 “감시·측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”을 “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추진현황”을 “추진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기본원칙) 시는 다음 각 호의 <u>내용</u>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생활환경 · 자연환경 · 지구환경의 <u>보전 · 관리</u>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</li> <li>3. ~ 6. (생략)</li> </ol>	<p>제3조(기본원칙) ----- <u>사항</u>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----- <u>보전 및 관리</u>-----</li> <li>3. ~ 6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4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5. (생략)</li> <li>6. “지구환경보전”이란 지구온난화, 오존층파괴, 해양오염,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<u>지구전체</u>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.</li> <li>7. (생략)</li> </ol>	<p>제4조(정의) ----- ---- <u>뜻은</u>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5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6. ----- ----- <u>지구 전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li> <li>7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5조(시의 책무)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<u>창조</u>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11. (생략)</li> <li>② (생략)</li> </ol>	<p>제5조(시의 책무) ① ----- ----- <u>조성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②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5조의2(보고) ① 시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<u>의회</u>에</p>	<p>제5조의2(보고) ① ----- ----- <u>서울특</u></p>

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환경오염, 환경훼손의 사항
2.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사항
3. (생략)

제7조(사업자의 책무) ① (생략)

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, 제품의 제조·가공·판매·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, 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~ ④ (생략)

제8조(시민의 권리) ① (생략)

② 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.

제9조(시민의 책무) ① (생략)

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.

③ ~ ④ (생략)

제11조(환경계획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계획(이하 “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

별시의회-----.

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-----.

1. ----- 환경훼손에 관한 ----
2. 환경보전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
3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사업자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절약 및 재활용과 -----  
-----.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시민의 권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환경보전시책 -----  
----- 시 -----  
-----.

제9조(시민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시 -----  
-----  
-----.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환경계획) ① -----  
-----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-----  
-----

하여야 한다.

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

5. (생략)

③ ~ ④ (생략)

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 환경기준의 설정) ① 시장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시 환경기준을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5조(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)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8조(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 등) 시는 폐기물 및 물재생시설,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·관리를 위하여
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사업 시행에 드는 ----- 방안

5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

----- 어긋나지 -----

-----.

제14조(시 환경기준의 설정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이  
를 유지하기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) ① -----  
-----  
-----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공공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 등)  
-----  
-----  
-----



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9조(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)

①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,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·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,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21조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)

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는 자치구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·사업자·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·운영 또는 조사·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·기술·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.

제23조(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)

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

----- 마련-----.

제19조(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)
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마  
련-----.

② -- 공공환경시설-----  
-----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-  
----- 마련-----  
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)

① -----  
----- 드는 -----  
----- 마련-----.

② -----  
드는 ----- 범  
위-----.

③ -----  
----- 수  
행하는 -----  
----- 대해 필요한 -----  
----- 범위에서  
포상할 -----.

제23조(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) ---

-----  
-----

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24조(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)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4조의2(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)

① (생략)

②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(이하 “협업체”라 한다)를 구축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③ (생략)

제24조의3(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협력)

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수탁사업, 보조금 등의 행정적, 기술적,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공공기관, 사업자, 단체, 시민 등은 대기질 개선, 자원순환, 신·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환

-----  
-----  
----- 마련 -----  
-----.

제24조(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) ① -----  
----- 시책을 추진  
하는 경우 ----- 지방자치단체와  
의 협력-----  
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4조의2(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인정  
하는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의3(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협력)

----- 자치구에서 -----  
-----  
----- 시 또는 자치구와 협약 -----  
-----  
-----

경보전 시책에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----- 대하여 그 책임-----  
-----.

제25조(정보의 공개) ① 시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5조(정보의 공개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해 -----  
-----.

② 시는 환경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----- 이 이루어질 -----  
-----  
-----.

제26조(시민참여 등) ① 시는 환경보전 시책 결정·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26조(시민참여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마련-----.

② ~ ④ (생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6조의2(환경보전에 관한 자문) ① (생략)

제26조의2(환경보전에 관한 자문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-----  
-----.

1. ~ 2. (생략)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법령 -----  
-----

제27조(환경교육·홍보 등의 진흥) ① 시는 자치구, 교육기관, 민간단체,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환경교

제27조(환경교육·홍보 등의 진흥) ① -----  
-----  
----- 환경교

육·홍보활동에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~ ③ (생략)

제28조(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)

① 시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·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,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29조(환경백서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(생략)
2.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
3. (생략)

육·홍보활동의 -----  
-----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)

① -----  
----- 감시·측정 -----  
-----  
-----.

② 제1항에 따른 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환경백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추진에 관한 사항
3. (현행과 같음)